

주식 처분시한 연장 신청서

수탁 기관	기관명	담당부서 (담당자)	전화번호 (팩스번호)
	주소		
연장신청기간		일 (1회 30일 이내 연장 가능)	
수탁내용 및 연장신청사유			
	※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첨부		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수탁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을 신청하오니 승
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(수탁기관의 장) (인)

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